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2.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

-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 지원계획공고 → 보조금 신청 → 접수 및 검토·조정 → 위원회 심의 → 지원결정 통보

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기능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

라. 사후평가, 별도개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 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 차년도 지원과 연계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
-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나.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3. 12. 22 ~ 2004. 1. 10 (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공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군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한다.